

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
제2차 정례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년 11월 28일
보건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년 10월 26일

나. 제안자 : 김현희 의원 외 18명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
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18. 11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현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1조~안 제3조)

- 2) 지원대상 (안 제4조)
- 3)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추진사업 (안 제5조)
- 4) 사업의 위탁 (안 제6조)
- 5) 중복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 (안 제7조 ~ 안 제8조)
- 6) 사업종사자의 비밀엄수 및 시행규칙 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, 제3조, 제11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, 「한의학 육성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 : 건강관리과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10. 29. ~ 11. 3.) 결과 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김동영)

가. 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임.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- 안 제1조, 제2조,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, 다른

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정하고,

- 안 제4조에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원대상을 난임진단을 받고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정함.
- 안 제5조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, 상담, 교육 및 홍보 등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추진사업과 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
- 안 제6조에서 위탁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과 부정수급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,
-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사업 종사자의 비밀누설의 금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 및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,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체외수정과 같은 양의학적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며, 2017년 10월부터는 이들 시술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,
-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고,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바,

- 한의학의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
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모자보건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1. "난임(難妊)"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난임극복 지원사업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
2.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
3.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□ 한의학 육성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한의학"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(韓醫學)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·개발한 한방의료행위(이하 "한방의료"라 한다) 및 한약사(韓藥事)를 말한다.